

#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003호
2. 발 의 자 : 서준오 의원 외 19명
3. 발의일자 : 2024년 8월 12일
4. 회부일자 : 2024년 8월 14일

### II. 주문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함.

### III. 제안이유

- 학교 현장에 근무하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의 업무 과부하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급식 안전과 건강과 성장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

-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 수와 상관없이 단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는 영양(교)사에게 과도한 업무부담을 주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급식 현안 대응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으로 대체인력 채용업무까지 추가되어 업무 과부하는 더욱 심각한 상황임.
-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학교급식법」 개정에 나서야 함.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국회와 교육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함.

#### IV. 참고사항

##### 1. 관계 법령: 「학교급식법」

##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심혁보)

###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건의안은 2024년 8월 12일 서준오 의원 외 1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003호로 제출되어 2024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건의안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안정적인 근무환경에서 학생들에게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 2. 주요 검토의견

- 현행 「학교급식법」(이하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법 제7조1)에서는 급식시설·설비를 갖춘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치원의 경우 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원아 수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의 경우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되, 예외적으로 같은 교육지

---

1) 「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청 관할의 경우 원아수 2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경우 공동으로 2개 유치원마다 1명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sup>2)</sup>.

○ 그러나 현재 2024년 4월 기준 서울시 공립학교의 영양교사 배치비율은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975개교 중 70.1%인 683명에 불과하며, 사립학교까지 포함하면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 1,346개교 중 728개교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특히 서울시교육청 영양교사 정원(683명)이 학교수(975교)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영양교사 대신에 교육공무직 영양사(또는 기간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표-1] 최근 3년간 영양교사 현황(서울시교육청 공립 기준)**

(단위: 개교, 명, %)

학년도	급식시설 설치 학교수	영양교사 수					배치비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2022	980	501	110	43	11	665	67.9
2023	979	504	111	49	11	675	69.0
2024	975	509	114	49	11	683	70.1

**[표-2]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영양교사 정·현원 현황 (2024. 9. 1. 기준)**

	정원					현원				
	초	중	고	특수	합계	초	중	고	특수	합계
2024	509	114	49	11	683	506	109	48	11	674

2) 「학교급식법 시행령」제8조의2(유치원에 두는 교사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국립·공립유치원(이하 “국공립유치원”이라 한다)과 원아 수가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국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로 선발된 사람으로 한다)을 1명 이상 교사로 두어 제8조 각 호의 직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는 유치원 중 원아 수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으로서 같은 교육지원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2개의 유치원마다 공동으로 제1항에 따른 교사를 1명씩 둘 수 있다.

- 영양(교)사 직무면에서도 살펴보면, 영양교사와 영양사의 적용 법률을 달리하고 있으나 직무는 식단 작성과 식재료 선정 및 검수, 급식 관련 위생과 안전 및 작업관리, 식생활 지도, 정보제공 및 영양상담,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3] 영양교사-영양사 자격 및 역할 비교

구분	영양교사	영양사																																								
자격 기준	<p>【초·중등교육법】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생략) ②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p>	<p>【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별표] 교육공무직원 정원의 총수 &lt;기관 2024.1.1., 학교 2024.3.1. 기준&gt;</p>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직종별</th> <th>유치원</th> <th>초등학교</th> <th>중학교</th> <th>고등학교</th> <th>특수학교</th> <th>각종학교</th> <th>행정기관</th> <th>합계</th> </tr> </thead> <tbody> <tr> <td>16</td> <td>영양사</td> <td>22</td> <td>54</td> <td>164</td> <td>73</td> <td></td> <td></td> <td>3</td> <td>316</td> </tr> <tr> <td>17</td> <td>조리사</td> <td>46</td> <td>564</td> <td>275</td> <td>43</td> <td>11</td> <td></td> <td>6</td> <td>945</td> </tr> <tr> <td>18</td> <td>조리실무사</td> <td>46</td> <td>2,536</td> <td>1,185</td> <td>196</td> <td>28</td> <td></td> <td>17</td> <td>4,008</td> </tr> </tbody> </table>	연번	직종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행정기관	합계	16	영양사	22	54	164	73			3	316	17	조리사	46	564	275	43	11		6	945	18	조리실무사	46	2,536	1,185	196	28		17	4,008
연번	직종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행정기관	합계																																	
16	영양사	22	54	164	73			3	316																																	
17	조리사	46	564	275	43	11		6	945																																	
18	조리실무사	46	2,536	1,185	196	28		17	4,008																																	
역할	<p>【학교급식법】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p>	<p>【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p>																																								

구분	영양교사	영양사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부칙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

-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에서는 영양(교)사 1인이 감당해야 업무 부담이 커져 학교급식의 질 저하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2식 이상의 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의 경우 영양교사를 추가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sup>3)</sup>, 이 또한 서울의 경우 3식을 제공하는 7개 고등학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이러한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22대 국회에서도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sup>4)</sup>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 이처럼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해소를 위해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 배치 등에 대한 요구가 높고, 현재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바, 영양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의 건의안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표5] 각급 학교에 두는 보건교사 등의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제2조제5호 관련)

2. 영양교사의 배정 기준

\* 시·도별 필요정원 =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 수 + 설치·폐지·통합된 급식 학교 수 + 2식 이상 급식 제공 학교 수) - (전년도 영양교사 정원 + 전년도 영양사 수)

4) 의안번호 220060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 의원 등 12인, 2024.6.18.)

- 이상으로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의안심사지원팀장

정진국(2180-8263)

입법조사관

김명신(2180-8269)

# 관계 법령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4조(학교급식 대상) 학교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유치원은 제외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인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급식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양교사가 배치될 때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학교급식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학교급식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영양교사는 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2.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3.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4.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5.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46호, 2024. 2. 6., 일부개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 2024. 2. 20.>

1. 집단급식소 운영자 자신이 영양사로서 직접 영양 지도를 하는 경우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3.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가 영양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한정한다.

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

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 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檢受)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5.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식품위생교육